



국토교통부

국 토 교 통 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유지보수공사 시공자격 유권해석 알림

1. 공정건설추진팀-332(2021.2.19.)호의 관련입니다.
2.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(건설공사의 시공자격) 등을 개정('18.12.)에 따라 '21.1.1.부터 공공공사의 업역규제가 폐지되었고, **공공발주자**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(경쟁입찰의 참가자격)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(입찰의 참가자격)에 따라 **건산법령의 시공 자격요건**에 적합한 건설사업자를 **경쟁입찰**에 참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.
3. 종합적 계획·관리·조정이 필요한 복합 **유지보수공사**의 경우 종합공사에 해당하므로 **입찰참가자격(시공자격)**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**종합건설사업자**이고 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**전문건설사업자(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제외)**도 자격이 있으며, 그 동안 이와 같은 내용으로 첨부1과 같이 질의회신을 하였고 최근 법제처에서도 첨부2와 같이 유권해석을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동 사항에 대해 기초자치단체를 비롯한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등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질의회신 주요내용(국토교통부) 1부.
2. 유권해석(법제처) 1부. 끝.